

제305회 임시회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(김광수 의원 대표발의)

제 안 설 명



2022. 2. 11.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 광 수
(더불어민주당, 기획경제위원회)

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도봉구 제2선거구 김광수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‘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’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른 말기환자,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.

이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, 인식조사 등 실태조사, 재정지원, 호스피스의 날 등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및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호스피스·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

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.

아무쪼록 본 건의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